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언어폭력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영화소개

짧은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극중에서 급작스럽게 둘째 천지(김향기 분)는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에 이어 딸까지 잃었음에도 곳곳이 살아가고자 하는 엄마(김희애 분)와 엄마를 곁에서 무뎠뎠하게 지키는 첫째 만지(고아성 분), 만지는 천지의 친구였다고 하는 화연(김유정 분)에게 의심을 품는데요.



한편, 아무 말없이 떠난 줄만 알았던 둘째가 남긴 메시지가 붉은 실뭉치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천지가 우아한 거짓말로 숨겨왔던 그 동안의 아픔과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 <우아한 거짓말>은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사회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영화는 학교 내 ‘언어폭력’의 실태와 그로 인한 아이들의 고민과 상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실태

실제로도 2013년 교육부에서 진행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3분의 1 이상이 ‘언어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행해지기도 쉽고 당하기도 쉬운 것이 언어폭력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비율(%)
언어폭력	35.3
집단따돌림	16.5
폭행·강금	11.5
사이버폭력	9.7
금품갈취	9.2
스토깅	9.0

〈자료: 교육부〉

흔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은 신체·물리적 폭력과 달리 증거나 흔적이 잘 남지 않아, 확인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언어폭력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의 정의에 명시된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낳는 행위’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모두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예시

- 말로 위협, 헐뜯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험담이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 약점을 들추거나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고 괴롭히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나아가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헐뜯 또는 위협하는 행위

※ 따돌림 예시

-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우아한 거짓말〉속 둘째 딸 천지의 경우에도 위의 진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천지 앞에서 욕설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뒤에서 천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히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천지와 화연 둘이서 무리한 선물까지 교환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일을 강요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생일파티에서 했던 화연이의 고의적인 행동 역시 따돌림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사회봉사에서부터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에 이르는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조치와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나이에 따라 형법 또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가해 유형	처벌내용	근거규정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0조 제1항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86조 과료
약취 또는 유인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7조 제294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재물 절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벌규정

유형	내용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감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가능)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년 이내

이처럼 학생들간의 험담, 소문, 뒷담화와 같은 ‘언어폭력’과 은근한 ‘따돌림’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폭력행위입니다. 따라서 천지와 같이 언어폭력과 따돌림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이 있다면 속으로만 끄끄 앓지 않도록 주위에서 문제상황을 알아봐주고, 적극적으로 학교와 법률제도의 지원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예방차원에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대해 가족과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제2의 천지와 같은 피해자 발생을 막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